

국민신탁단체 지정신청 결과 통보서

신청인	법인명	대표자 성명
	주소 (전화번호:)	
신청분야	☐ 문화유산 국민신탁단체 ☐ 자연환경자산 국민신탁단체	
검토결과		

「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」 제20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신탁단체 지정 여부를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

직인